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세사기 가중처벌〉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10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가.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개관 및 종전 개정안 논의 경과	3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기관 의견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19.
3. 회 부 일: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 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규모 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전세사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

	<u>로 가중처벌한다.</u> <u>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u> <u>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u> <u>할 수 있다.</u>
--	---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부동산 경제질서를 해치는 전세사기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부과와 전세사기 예방에 취지가 있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개관 및 종전 개정안 논의 경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함)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¹⁾ 이른바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명성사건’ 등 1980년대에 발생한 굵직한 경제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1) **특정경제범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의 비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1983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84년 1월 1일 시행되었음.²⁾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는바, 이는 해당 죄에 대한 「형법」상의 법정형으로는 대규모의 금전적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³⁾

<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사기죄 법정형 비교 >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 상당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김정환·김슬기, 형사특별법 제2판(2022), 박영사, 405면.

3)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297 결정례]에서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경제범죄가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득액이 적어도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아니라 「형법」이 적용됨.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됨.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형법」상 죄형균형 원칙(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⁴⁾

전세사기범죄와 관련 그간의 개정논의로는 제21대국회에서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11호),⁵⁾ 조수진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13호),⁶⁾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35호)⁷⁾이 있었음.

4)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① 10인의 다수의견은 그 가액이 구성요건요소라는 입장이고, ② 3인의 소수의견은 가액은 양형요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5) 수인에 대한 동종 사기범죄 시 각 피해자의 피해가액을 합산하여 5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6)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참고로,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인요한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4019호)과 특정재산범죄의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10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나. 검토의견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전체 피해규모 및 죄질 등을 감안할 때 「형법」상 사기죄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⁹⁾

7)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8)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

<최근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

판결일	법원	주범 형량	단계	비고
2025.5.15.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사건(전체 피해액 170억원)
2025.1.23.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인천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사건(전체 피해액 148억원)
2025.1.15.	서울남부지법	징역 10년	항소	영등포·금천·동작 전세사기사건

개정안은 전세사기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행정기관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여부를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벌체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먼저, 일반법인 「형법」에 대비되는 특별형법은 개념적으로 특별형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특별한 구성요건표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단순히 법정형의 가중만이 아니라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¹⁰⁾

그런데, 개정안은 범죄자의 범행 방법, 신분,¹¹⁾ 피해 규모¹²⁾ 등 가중

				(전체 피해액 138억원)
2024.12.20.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부산 전세사기 사건 (전체 피해액 180억원)
2025.3월말.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전체 피해액 795억원)
2025.6.25.	수원지법	징역 15년	상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전체 피해액 760억원)

10)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결정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 소원사건에서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조항들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범행방법, 신분 등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11)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결정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위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책임의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함.

된 불법이나 책임의 요소가 아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¹³⁾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 구조로서 범죄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피해액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단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취지가 다르다는 점¹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전세사기 가중처벌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6헌바25 결정례]는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함.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 6. (생략)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구성요건인 이득액¹⁵⁾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¹⁶⁾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¹⁷⁾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임.¹⁸⁾¹⁹⁾

그런데, 개정안의 입법배경이 된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가 전체 피해자의 99.63%에 이르러,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엄중한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표 1] 전세사기피해 임차보증금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5,578건 (100%)	10,798건 (42.22%)	10,593건 (41.41%)	3,513건 (13.74%)	579건 (2.26%)	88건 (0.34%)	7건 (0.03%)

자료: 2024. 12. 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15)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채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함.

16)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1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1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19) 제21대국회에 발의되었던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1711호)은 수인에 대한 동종사기범죄는 포괄일죄로 보고 그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① 우리 법체계상 입법례가 없고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점, ② 「형법」상 구성요건의 변동 없이 형만 가중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수인에 대한 동종 사기범죄에 대해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상습범(「형법」 제351조)이나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형법」 제38조)할 경우에 오히려 처단형이 높은 경우가 있는 점, ④ 동종 범죄 발각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는 점, ⑤ 포괄일죄로 기소·처벌할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나중에 발각된 동종사기범죄의 면소처리 등이 문제가 되었음.(21대국회 406회 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p.12; 21대국회 407회 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p.17·18 참조)

셋째, 개정안은 전세사기 가중처벌 대상을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범죄가담형태를 고려하여 가중처벌 대상에 대하여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가중처벌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배경이 된 최근 전세사기의 가담 형태를 보면 전세사기 가담자 중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25%에 이르고, 브로커도 13.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전세사기범죄 재발방지 및 엄중 처벌이라는 입법의도를 달성할지는 최근 전세사기범죄의 주범·종범관계, 가담형태 등에 대한 추가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 전세사기 가담 형태별 검거 인원

합계	(가짜)임대인 임차인 등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소유자	브로커	건물 관리인	건축주	감정 평가사
8,323 (100%)	3,141 (37.7%)	2,081 (25%)	1,454 (17.5%)	1,122 (13.5%)	372 (4.5%)	128 (1.5%)	25 (0.3%)

자료: 2024. 9. 1. 정부합동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넷째, 개정안은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나, 현행법 제3조 특정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의 관계에서 개정안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전세사기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지 여부

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현행법 제3조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반면,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현행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오히려 개정안이 전세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을 낮추게 되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 3. 24. 양형기준 개정을 통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였음.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된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영역에 무기형을 추가하는 등 이득액 5억원 이상 사기범죄의 가중영역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 사기범죄 양형기준 개정 내용]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1년 6월	1년~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2년 6월	1년~4년	2년 6월~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4년	3년~6년	4년~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6년	5년~8년 ~~9년~~	6년~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9년	6년~10년 ~~11년~~	8년~13년 ~~17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2년 6월	1년 6월~3년	2년 6월~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3년	2년~5년	4년~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5년	4년~7년	6년~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7년	6년~9년 ~~11년~~	8년~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10년	8년~13년 ~~15년~~	11년이상, 무기

※ 자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정리하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행정기관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가중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벌체계상의 문제,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범죄가담형태를 고려한 형사정책적 측면, 현행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경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중복적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할 이유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개정안이 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 이상을 가중처벌하자는 취지라면, 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경합범 합산의 특례규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② 형사법상 책임원칙, 형벌체계상 균형을 고려할 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③ 기소 및 처벌 시점에 따라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6